

코로나19 확진자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이용 관련 Q&A

2022. 3. 25.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



최근 코로나19(오미크론) 확진자의 대부분이 재택치료를 하고 있는 상황이며, 수동감시 대상인 확진자의 동거인도 방역수칙 준수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장기요양 수급자 및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확진받은 경우에 급여제공 가능 여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질의가 있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	요양보호사	가족·동거 여부		가능 여부	비고
확진	비확진	가족	동거(Q&A1)	○	방역수칙 준수
			비동거	○	방역수칙 준수
		일반		○	방역수칙 준수
	확진	가족	동거(Q&A2)	○	요양보호사 건강상태 고려
			비동거	X	확진자 격리장소 이탈 불가
		일반		X	
비확진	비확진	가족	동거	○	
			비동거	○	
		일반		○	
	확진	가족	동거(Q&A3)	X	
			비동거	X	확진자 격리장소 이탈 불가
		일반		X	

1

확진된 수급자에게 동거하는 가족인 요양보호사(비확진)가 방문요양 급여 제공이 가능한지?

- 확진자의 동거인은 수동감시 대상(2022.2.27.~)이며, 수동감시 대상자는 확진자의 검사일부터 10일 동안 권고수칙*을 준수하면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동거하는 가족인 요양보호사(비확진)가 확진받은 수급자에게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는 급여비용 산정이 가능합니다.

⇒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공통안내문 ❶❷, 재택치료자의 동거인 안내문) 참조

* 동거인에 대한 권고: PCR 검사결과 나올 때까지 자택 대기 권고, 출근 및 불가피하게 외출할 경우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착용, 대면접촉 최소화,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권고 준수 기간 중 의심증상 발생 시 의료기관 방문, 증상 호전 시까지 자택 대기

- 또한, 비동거하는 가족 또는 일반 요양보호사(비확진)는 확진된 수급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급여비용 산정이 가능합니다.

2 동거하는 수급자와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모두 확진된 경우에 방문요양급여 제공이 가능한지?

- 동거하는 수급자와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모두 확진되어 재택치료 중인 경우,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건강상태가 급여제공이 가능한 수준이라면 재택치료자 생활수칙을 준수하면서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고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공통안내문 ❶) 참조

3 동거하는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확진된 경우 비확진 수급자에게 방문요양급여 제공이 가능한지?

- 확진자는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하여 보건소로부터 통보받은 격리기간(전염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기) 동안 타인과 접촉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무증상이라 하더라도 확진된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다만, 수급자에게 급여제공이 불가피한 경우 시설장은 타 요양보호사(비확진) 등에 의해 안전하고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1



확진자 공통안내문

귀하는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진**되었습니다.
빠른 쾌유를 바라며, **확진자의 격리 및 치료와 동거인의 권고준수사항** 등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본 안내문은 확진자에게만 통보되오니, 동거인에게도 아래 내용을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침 변경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 치료안내

오미크론변이는 델타변이보다 중증도가 낮아 무증상, 경증 확진자는 해열제, 감기약 복용 등 대증치료를 통해 회복이 가능합니다.

- ▶ 휴식과 안정을 취하면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 ▶ 증상이 있을 때는 **진통해열제, 종합감기약** 등을 복용하세요.
- 경증(인후통 등)인 경우 해열제, 감기약 등 대증치료를 통해 대체로 호전
* 단, 중증으로 진행할 수 있는 고위험군은 항바이러스제(먹는치료제) 투약 가능
- ▶ 발열 등 증상으로 진료가 필요하면, **전화 상담·처방**이 가능합니다.
* 중복하여 전화상담·처방을 받지 않도록 주의(코로나19 외 질환은 본인부담 발생)

재택치료 개요



! 격리안내

검체채취 후 결과 확인시까지 가급적 외출을 자제합니다.
확진자에 대한 법정격리기간은 통지일(양성 확인일)부터 격리해제일까지이며 집(생활치료센터, 의료기관)에서 격리하게 됩니다.
격리해제 시점은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7일차 자정(24:00)입니다.

* 본인진료를 위해 불가피하게 외출을 해야 할 경우

- ① 사전예약 후 의료기관 방문 ②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착용
- ③ 타인과의 대면접촉 최소화 ④ 도보, 자차 또는 방역택시 이용

- ▶ 감염전파 방지를 위해 외출하지 말고 집에 머물러 주세요.
화장실·물건 등은 동거인과 따로 사용하고 자주 소독 하세요.

* 격리의무 위반 시 감염예방법에 따라 형사 고발 및 처벌 가능

- ▶ **격리해제 전 검사는 하지 않습니다.**

★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권고

출근·등교 포함 외출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 ▶ 본 안내문은 재택치료자와 동거인이 공유하여 권고사항 준수에 협조 바랍니다.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2

* 지침 변경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동거인 공통안내문

★ 권고준수기간

예방접종완료 여부에 관계없이 **재택치료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

- 3일 이내 PCR검사, 음성시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권고

※ 60세이상 동거인은 3일 이내 PCR검사, 음성시 6~7일차에 PCR 검사 권고

! 권고수칙

동거인은 확진자의 확진 전·후 전염력 높은 시기에 공동생활을 통해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감염 가능성이 높으므로 검사 및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 동거인은 재택치료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3일이내 PCR검사***를 받으세요.
PCR 검사 후 음성으로 확인될 때까지 자택에서 대기해 주세요.

* 확진자의 양성통보 문자를 전달받아 보건소 방문시 제시하면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음

※ 증상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신속항원검사를 받으세요.(진찰료 본인 부담 발생)

-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으세요.

* 가장 신속하고 접근이 쉬운 방법으로 검사(자가검사, 선별진료소 방문 등)

60세 이상자의 경우에는 PCR 검사 권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시 의료진의 조치에 따름

➤ **재택치료자의 검사일부터 10일 동안 다음 사항을 준수해 주세요.**

- 가급적 외출 최소화, 출근 또는 불가피한 외출시는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착용,
타인과의 대면접촉 최소화, 사적 모임 및 고위험시설 방문 자제,
의심증상 발생시 의료기관 방문

! 건강관리

10일 동안 매일 아침·저녁 코로나9 의심증상이 있는지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증상 발생 시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세요.

➤ **코로나9 의심증상***은 발열(37.5℃),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등입니다.

- 반드시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세요.



의료적 상담 이외, 생활안내, 의료이용 방법, 격리기간·해제, 생활지원금 등 궁금하신 사항은
지자체별로 운영중인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에 문의하세요.

☑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면 이렇게 하세요!

- 지진 등 재난 발생 시 재난 대비 국민행동요령(예: 튼튼한 탁자 아래 몸을 보호)에 따릅니다.
- 재택치료 중에 지진 등 재난 발생으로 **집안에서 머무르기 곤란한 경우 외부로 대피할 수 있습니다.**
- **외부로 대피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재택치료자의 동거인 안내문

* 지침 변경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 권고준수기간

예방접종완료 여부에 관계없이 **재택치료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
- 3일 이내 PCR검사, 음성시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권고

※ 60세이상 동거인은 3일 이내 PCR검사, 음성시 6~7일차에 PCR 검사 권고

10일간의 권고수칙

➤ **3일이내 PCR검사를 받으세요. PCR 검사 후 음성 확인시까지 자택 대기를 권고합니다.**

* 확진자의 양성통보 문자를 전달받아 보건소 방문시 제시하면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음
※ 증상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신속항원검사를 받으세요.(진찰료 본인 부담 발생)

➤ **이후에도 가급적 외출을 삼가하여 주시고, 출근 또는 불가피한 외출을 할 경우**

①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착용, ② 타인과의 대면접촉 최소화,
③ 사적 모임 및 고위험시설 방문을 자제합니다.

➤ **6~7일차에, 가장 신속하고 접근이 쉬운 방법으로 신속항원검사*를 받으세요**

[자가검사, 선별진료소 방문 등].

*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시 의료진의 조치에 따름

가족 간 전파 예방

➤ **동거인은 확진자와 철저히 공간을 분리하여 생활합니다.**

- 확진자와 마주칠 경우, KF94(또는 동급)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합니다.
- 확진자와 같은 공간에서 식사 및 활동을 절대 하지 않도록 합니다.
- 환기*와 표면소독(소독티슈 등을 이용)을 자주 실시합니다.
* 하루 최소 3회 이상, 10분 이상 환기, 환기설비가 있을 경우 상시 가동

건강 관리

➤ **재택치료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 동안 매일 아침·저녁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발열, 기침 등 증상이 관찰되면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합니다.

- 코로나19 의심증상*은 발열(37.5℃),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등입니다.
- 발열 등 증상으로 진료 및 처방이 필요한 경우, 평소 이용하시는 병·의원을 방문하여 필요한 진료를 받도록 합니다.
* 진료 및 약 처방 시 본인부담금 발생함

➤ **동거인 중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추가 확진자는 새롭게 7일 격리**합니다.

첫 재택치료자 및 다른 동거인의 추가격리는 하지 않습니다.

공동격리자로서의 격리

➤ 재택치료자가 **중증장애인, 영유아·아동(만1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이하)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보호자(1인 원칙)에 대하여 관할보건소에 신청하여 공동격리자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 재택치료자의 격리기간 중 신청하여야 하며, 격리해제 후 신청시 소급적용 안됨

☑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면 이렇게 하세요!

- 지진 등 재난 발생 시 재난 대비 국민행동요령(예: 튼튼한 탁자 아래 몸을 보호)에 따릅니다.
- 재택치료 중에 지진 등 재난 발생으로 집안에서 머무르기 곤란한 경우 외부로 대피할 수 있습니다.
- 외부로 대피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의료적 상담 이외, 생활안내, 의료이용 방법, 격리기간·해제, 생활지원금 등 궁금하신 사항은
지자체별로 운영중인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에 문의하세요.